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전자거래감시팀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 및 존속기한(3년)을 설정하고, 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업무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정책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협력심판담당관을 기업거래심판담당관으로 부서명을 변경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00.00. ~ 2023.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책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협력심판담당관”을 “기업거래심판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력심판담당관”을 “기업거래심판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9항에 제11호를 신설한다.

11.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제11조제2항 중 “지식산업감시과 및 약관특수거래과를”을 “지식산업감시과·약관특수거래과 및 전자거래감시팀을”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전자상거래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영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제13조제2항 중 “국제기업결합과 및 가맹거래조사팀”을 “국제기업결합과·가맹거래조사팀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으로 “가맹거래조사팀장”을 “가맹거래조사팀장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

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 기업의 개발
4.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자거래감시팀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자거래감시팀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전자거래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식산업감시과장이 분장하고,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하도급조사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 밑에 <u>정책홍보담당관</u> 을 두되, <u>정책홍보담당관</u>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u>정책홍보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 7. (생 략)	제4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u>홍보담당관</u> ----- -- <u>홍보담당관</u> ----- -----. ③ <u>홍보담당관</u> ----- -----.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심판관리관) ① (생 략)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 · 경쟁심판담당관 · <u>협력심판담당관</u>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 략) ⑤ <u>협력심판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 2. (생 략)	제6조(심판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기업거래심판담당관</u>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기업거래심판담당관</u> ----- ----- -----. 1. ~ 2. (현행과 같음)
제9조(경쟁정책국) ① ~ ⑧ (생 략)	제9조(경쟁정책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생략)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시과 및 약관특수거래과를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제조업감시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략)

⑤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⑨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제11조(시장감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식산업감시과·약관특수거래과 및 전자거래감시팀을 -----

기술서기관으로,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⑥ (생략)

<신설>

<삭제>

<삭제>

<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전자상거래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생략)

②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급조사과·기술유용조사과·유통대리점조사과·기업결합과·국제기업결합과 및 가맹거래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영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제기업결합과·가맹거래조사팀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

----- 가맹거래 조사팀장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분장한다.

1. ~ 4. (생략)

5. 국내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⑦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해외 기업결합 제도 및 심사동향 분석

⑧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⑦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⑧ (현행과 같음)

⑨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 기업의 개발

4.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u>및 이행 확인</u> <u>5.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u> <u>산업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u> <u>신고센터의 운영</u>
--	--